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소방위원회
전문위원 장 용 대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비상구 폐쇄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화재시 다중이용 시설의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며
-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안 제4조부터 제6조)

- 충청북도 도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반업소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안 제4조)
- 신고의 보완요청등(안 제5조)

- 접수 및 처리(안 제6조)

나. 포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부터 제8조)

- 영업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7조 제1항)
- 위원장은 소속 주무과장으로, 간사는 주무담당으로, 위원은 소속서장이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속 소방공무원중에서 선정함(안 제7조 제3항)
-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안 제8조)

다. 포상 및 신고자 보호(안 제9조부터 제11조)

- 신고자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함(안 제9조제2항)
- 지급한도 : 본인과 가족(직계 존비속)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액은 월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음(안 제9조제3항)
- 같은 날 같은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안 제9조제4항)
- 신고사항이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은행계좌로 입금(안 제10조)
- 서장은 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조치(안 제11조)

라. 예산의 확보(안 제12조)

4.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2009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의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 및 준칙(안)』의 시달에 따라 비상구 폐쇄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화재시 다중이용시설의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관련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안 제4조부터 제6조)

- 충청북도 도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반업소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안 제4조)
- 신고의 보완요청등(안 제5조)
- 접수 및 처리(안 제6조)

○ 포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부터 제8조)

- 영업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7조 제1항)
- 위원장은 소속 주무과장으로, 간사는 주무담당으로, 위원은 소속서장이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속 소방공무원중에서

선정함(안 제7조 제3항)

-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안 제8조)

○ 포상 및 신고자 보호(안 제9조부터 제11조)

- 신고자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함(안 제9조)
- 신고사항이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은행계좌로 입금(안 제10조)
- 서장은 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조치(안 제11조)

○ 예산의 확보(안 제12조)

-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토록 함

금번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은 최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피난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의 설치 행위등 불법행위로 인한 다중이용시설의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책임성 제고와 안전문화의식의 조기정착 및 소방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따른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첫째, 본 조례시행과 관련한 대상 물건은 특정소방대상물 25,022개소, 다중이용업소 4,737개소, 신종다중이용업소 114개소 등 29,873개소이며, 도내 소방인력중 현장확인 가능인력 232명 대비 평균 126개소의 대상물건이 되는바 소방인력의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현장확인 인력운용계획과 조례제정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둘째 (안)제4조의 신고 당사자를 충청북도 도민으로 한정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셋째 (안)제7조의 포상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원장은 소속 주무과장으로, 간사는 주무담당으로, 위원은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소방서 소속 공무원으로만 포상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심의시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외부 위원의 포함등 객관성 확보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넷째 (안)제9조 제3항의 포상 대상자를 본인과 가족(직계 존비속)으로 하여 소방방재청 준칙안의 “동일한 사람”을 확대한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다섯째 (안)제11조 제2항의 “담당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을 누설시 담당공무원의 징벌에 관한 설명이 요구됨.

여섯째, (안)제13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불임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관련-

시·도별 조례제정 추진현황

구 분	조례 추진사항	시행 예정일	소요예산액	비 고
서울	3월중 입법예고	7월 이후	204,000천원	
부산	입법예고 중(2.24~3.16) 4월중 의회 상정예정	상반기 중	75,000천원	
대구	입법예고 완료 3월중 의회 상정예정	공포일	20,000천원	
인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3.5) 4월중 의회 심사	공포일	150,000천원	
광주	3월중 의회 상정 4월 시행예정	공포일	14,578천원	
대전	3월중 조례 제정	2010. 7. 1.	50,000천원	
울산	입법예고 중(2.18~3.11)	미 정	20,000천원	
경기	조례규칙심의회(3.4) 3월중 의회 심의예정	2010. 7월중	35,000천원	
강원	3월 의회 상정 4월 시행예정	2010. 5월말	18,000천원	
충북	입법예고 완료 3월 의회 상정	2010. 4월중	10,000천원	
충남	의회 상임위 심사(2.17) 본회의 의결(2.26) 4월중 공포 예정		58,000천원	
전북	입법예고중 의회 공포(4월중)	공포일	26,000천원	
전남	입법예고 완료 3월 의회 상정예정	공포일	57,000천원	
경북	의회 상정(3.2)	2010. 7. 1.	40,000천원	
경남	3월중 규제및 법제심사 4월중 공포예정	미 정	18,000천원	
제주	입법예고 완료 3.22 의회 상정예정	공포일	5,000천원	